

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용역명 : 권선동 1070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
- 위치 : 권선구 권선동 1070번지 일원
- 과업내용 : 폐아스콘(깨기) 464톤, 폐콘크리트 96톤 운반 및 처리 등
-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90일간
- 용역금액 : 금33,33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기초금액 : 금33,33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2.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

- 견적서 제출기간 : 2026. 9. 3.(목) 10:00 ~ 2026. 9. 8.(화) 10:00
※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.
- 개찰일시 : 2026. 9. 8.(화) 11:00
※ 견적서 개찰장소 :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
※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※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.

3. 견적 및 계약방식

-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(총액) 용역입니다.
-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<http://www.g2b.go.kr>)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 입찰은 「**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**」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4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,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
- 1) 입찰공고일 전날 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)으로 한다]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] 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 까지 주된 영업소 [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] 소재지가 **수원시** 내에 있어야 합니다.
- 2)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**폐기물중간처리업(건설폐기물)으로 등록된 업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집·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**
※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(건설폐기물)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(분담이행 방식)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※ 해당 용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)제4호 특정한 성능, 기술,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.

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<별표 1>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.

5. 공동도급

- 단독, 또는 공동도급(분담이행 방식만 가능)이 가능합니다.
- 공동수급체는 대표사(수원시 소재 업체)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, 분담업체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.
-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분담비율

구분	계(%)	폐기물중간처리업 (건설폐기물)	폐기물수집운반업 (건설폐기물)
분담비율	100	56	44

※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: 2026. 9. 7.(월) 18:00, 나라장터
-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,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,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.
-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입찰공고일 기준)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[별첨2]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.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

-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- 설계도서 등 열람: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권선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(홍진영 ☎031-5191-6119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7. 개찰 및 낙찰자 결정

-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-3% ~ +3%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

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입찰공고일 기준 적용)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**낙찰하한율(88%)이상 최저가**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대상을 결정합니다.
-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천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천 방식 적용)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위 사항 이외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의합니다.

8.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

- 가.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의 납부: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.
- 다.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9.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입찰공고일 기준 적용)에 따릅니다.

10. 청렴계약 이행사항

-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「청렴계약이행서약서」 및 「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」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「청렴계약이행서약서」 및 「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수원시 홈페이지[suwon.go.kr, 수원소식>계약정보>관련정보>공지사항]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

11. 하도급에 관한 사항

-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(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)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.
- 만약,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)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기타사항

-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, 지방서,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- 또한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안전보건관리

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- 입찰결과는 나라장터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 홈페이지(www.g2b.go.kr)에 게시됩니다.
- 본 용역의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(계약체결)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(협약가능)하여야 하며,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용역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(협약가능)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(소화)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계약의 대가 청구 시(선금, 기성금, 노무비, 준공금 등)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1조의4(보험료의 납부증명), 「국민연금법」 제95조의2(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)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4(보험료등의 완납증명)에 따라 4대 사회보험(건강·연금·고용·산재) 납부(완납)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「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」 제11조에 따라 「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(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[www.suwon.go.kr] 수원소식 ⇒ 계약정보 ⇒ 관련정보 ⇒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)
- 본 입찰(견적)과 관련하여 **부패행위**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(☎031-5191-2092, 조사팀)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 [무기명 신고] (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)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 [기명 신고] (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)를 이용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(☎031-5191-6482), 용역(설계내역서 등)에 관하여는 하천하수팀(☎031-5191-611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
수원시권선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기업출납원
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<별표1>
[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, 2026.5.28., 일부개정] [시행 2026.6.2.]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, 담합 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 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(수익계약 체결 제한)

[시행 2022.5.19.] [법률 제18191호, 2021.5.18., 제정]

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

- ① 소속 고위공직자
-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
-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-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- ⑤ 해당 공공기관이 「국회법」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
- ⑥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
-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·비속 (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
-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